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승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220 발의연월일: 2022. 4. 12.

발 의 자:조승래·홍정민·정일영

장철민 • 이원욱 • 양정숙

이용빈 · 김홍걸 · 도종화

최종윤 • 한준호 • 송기헌

서영석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방사선 이용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과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현재 발전용원자로 외에 연구를 위한 연구용원자로는 방사 선 건강 영향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연구용원자로 인근 주 민들과 작업 종사자의 건강 영향은 알 수 없는 상황임.

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을 포함시켜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(안 제105조 의2제1항 등). 법률 제 호
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5조의2제1항 중 "발전용원자로 및"을 "발전용원자로, 연구용원자로(열 출력 2메가와트 이하의 연구용원자로는 제외한다) 및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5조의2(방사선 건강영향조사)	제105조의2(방사선 건강영향조사)
① 위원회는 방사선 이용이 국	①
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	
악하기 위하여 <u>발전용원자로</u>	<u>발전용원자로,</u>
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중 위	연구용원자로(열 출력 2메가와
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	트 이하의 연구용원자로는 제외
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	한다) 및
및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	
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	
수 있다.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